

#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

#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6. . .

발 의 자: 김정도 의원(1인)

찬 성 자: 김근한·김민성·이상호·이지연  
장미경·허민근 의원(6인)

## 1. 제안이유

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미사용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변경에 관한 사항(안 별표 5 제3호)

나. 장기재직휴가 이월에 관한 사항(안 별표 5 제4호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2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나. 부서검토: 총무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3일 이상 10일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장기재직휴가의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다.
4.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는 이월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장기재직휴가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5]

장기재직휴가 운영 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1. 재직기간 별 휴가부여 일수

재직기간	휴가일수
5년 이상 10년 미만	재직기간 중 5일
10년 이상 20년 미만	재직기간 중 15일
20년 이상	재직기간 중 30일

2.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름

3.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3일 이상 10일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장기재직휴가의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다.

4.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는 이월할 수 있다.

5.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 카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⑮ (생략)

# 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: 총무과

조 례 명	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(위임규정)</li><li>▪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 7(특별휴가)</li></ul>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개정(안 별표 5 제3호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당초) 5일 이상 10일 이내 → (변경) 3일 이상 10일 이하</li></ul></li><li>○ 재직기간별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(안 별표 5 제4호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(당초) 이월 불가 → (변경) 이월 가능</li></ul>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최소일수 기준을 완화하고 미사용 휴가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,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기대효과: 휴가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,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근무 의욕 향상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</li><li>○ 소요예산: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(비용 발생) 요인 없음</li><li>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</li></ul>	